

학술연구기금관리규정

제 정	1999. 3.
개 정	2006. 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이하 “본대학”이라 한다) 연구 진흥을 위한 학술연구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기본 지침을 정하여 기금의 합리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 (관리부서) 기금의 관리는 산학협력단에서 관장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이라 함은 재단 출연금, 외부기관 기부금, 연구 간접경비, 기타수입금 등으로 연구 및 학술활동을 위하여 본 대학에 무상으로 후원된 재산을 말한다.

제4조 (회계처리) ①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본대학의 세입과 세출 예산에 관한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기금은 금융기관의 별도 계좌에 예치하여 행정지원처 경리팀에서 관리하고 별도 계좌 설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③ 기금의 집행은 산학협력단의 집행계획에 따른다.

④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 및 기타 수입은 제 4 조 ②항의 계좌에 적립한다.

제5조 (영수증의 발급과 사의(謝意)의 표시) 기금의 기부 시에는 총장 명의의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의(謝意)를 표할 수 있다.

제6조 (사용) 기금은 일정 기간 적립하며, 기금 적립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 수입 및 기타수입금은 연구지원 및 학술연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에 사용할 수 있다.

1. 교내 연구비
2. 연구시설 유지 및 보수비
3. 연구 활동 지원 인력의 인건비
4. 학술 및 연구 활동 지원비
5. 기타 학술 연구 및 연구 활동의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제7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